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26

발의연월일: 2021. 6. 16.

발 의 자 : 홍정민 · 이규민 · 박성준

장경태 • 유정주 • 김병욱

오영환 · 이용우 · 김민석

민형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·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·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.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의 국·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, 지구단위계획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참고로, 도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도시개발법」은 국공유재산의처분제한 범위를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등 매각제한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 상 국·공유재산 매각·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

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·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30조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한다"를 "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"를 "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・공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국유재산・공유재산 등의	제30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 등의
처분 등) ① (생 략)	처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	②
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	
제시하여야 <u>한다</u> .	<u>하며, 그 기간 내에</u>
	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
	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	3
국유재산· <u>공유재산은 도시재</u>	<u>공</u> 유재산으로서 도시재
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	<u>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·공</u>
거나 양도할 수 없다.	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
	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
	<u>목적으로</u>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